

국토교통부 개인정보 영향평가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요약본

2024.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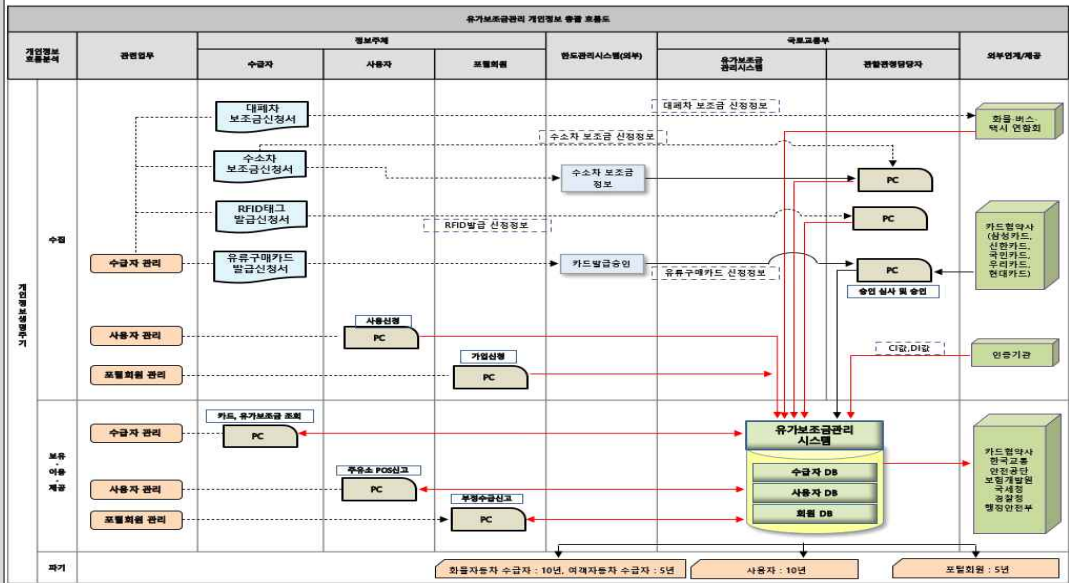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요약본							
공공기관 명		국토교통부					
평가기관	(주)컴앤휴먼	평가기간	2024.09.01 ~ 2024.11.07	평가예산	☐ 1천만원 미만 ☐ 1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평가대상 시스템 개요	시스템명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			시스템 구축 또는 변경 일정	2024.05.09 ~ 2025.03.05	
	추진 개요 및 목적	(정책) '버스, 택시, 화물 등 운송업계의 실 데이터'에 근거한 정책 기획·실행·평가지원 시스템 구축 (산업적 배경) 유가보조금 제도의 변화 및 발전을 위하여 유연한 확장 및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서비스 여건) 보조금 지급 및 행정처분 등 과중한 업무로 시스템을 이용하는 지자체 담당자의 업무 숙지 및 수행 부담 최소화					
	추진성격	대상여부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제1호에 해당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처리			추진 예산	2,790백만원
		추진주체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추진근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1조 (유류구매카드 사용자), 제22조(유류구매카드 미사용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5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12조(연료 구매카드 발급절차), 제18조(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방법)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추진 유형	☐ 신규 구축 ☒ 변경(고도화) ☐ 운영
		신기술 유형	해당 없음				
	주요내용	1. 유가보조금 포털시스템 구축 ○ 유가보조금 사용자 포털 화면 구성 (로그인, 권한관리 포함) 2.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 기능 고도화 (버스, 택시, 화물차시스템) ○ 개별 로그인 접속권한에 따른 업무 시스템 접근 허용 ○ 유가보조금 신청, 지급 및 정산 등 유가보조금 운영·관리 행정처리 지원 기능 개선					

		3. 초기 데이터 구축 ○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데이터를 식별하고 데이터 정제, 이행, 검증 등을 통한 고품질 데이터를 목표 시스템으로 이관 ○ 유가보조금, 업무지원, 통계, 과거 유가보조금 등으로 구성된 유가보조금관리 시스템 데이터를 통합 DB로 구축 4. 시스템 연계 구축 (기관연계, 데이터제공, 인사시스템연계) ○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 운영 및 부정수급방지에 필요한 자격관련 데이터를 유관기관, 인사정보, 통합한도관리시스템 연계 구축 5. 개인정보영향평가 ○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관리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변경 시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수행
	운용체계 변경내용	• 수집·처리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추가

개 인 정 보 파 일 개 요	파일명	정보주체수	개인정보 항목	제3자 제공	개인정보 처리 목적
	수급자	900,000건	[필수] 차량번호, 주민번호, 성명, 카드번호, 차주주민번호, 차주명, 전화번호, 예금주, 주소, 계좌번호, 생년월일, 휴대전화, 수탁자주민번호, 수탁자성명, 비밀번호, 이메일, CI값, DI값	[제공근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62조(자료 제공 요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의 10(자료의 제공) [제공목적] 유가보조금 수급자격 확인, 운수 종종사자, 보험, 면허정보 차량 및 지방세 확인 [제공받는자/항목] <카드협약사> 차량번호, 성명, 주민번호, 카드번호, 차주명, 차주주민번호, 계좌번호, 예금주,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 전화번호 <교통안전공단> 차량번호 <보험개발원> 차량번호 <경찰청> 주민번호 <행정안전부> 차량번호, 차주명, 차주주민번호	유가보조금 관리 및 지급을 위한 수급자 정보, 차량정보, 차량보험정보, 면허정보, 지방세 정보 자료 요청

	사용자	15,000건	[필수] 아이디, 비밀번호 , 성명, 이메일, 휴대전화, 전화 번호, CI값, DI값	-	유가보조금 포털시스템 사용자 관리
	포털회원	10,000건	[필수] 아이디, 비밀번호 , 성명, 이메일, 휴대전화, 전화 번호, CI값, DI값	-	유가보조금 포털시스템 포털회원 관리
[개인정보 처리 분석] - 개인정보 수집 단계 -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의 유가보조금 수급자는 카드협약사(삼성카드, 국민카드, 우리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별로 차량 한 대당 한 장의 유류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하며, 카드사는 수급자 신용에 따른 유류구매카드 종류를 안내 - 카드 발급이 가능한 수급자는 차량별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거래·체크카드 중 한 종류의 카드를 선택하여 발급을 신청 - 카드협약사는 한도관리시스템의 정보를 기준으로 수급자의 카드발급 적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하고 관할관청의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카드발급 승인을 요청함 - 연계를 통하여 유가보조금 수급자 개인정보가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되고 DB에 저장됨. - 그 밖에 RFID태그 발급신청 시, 수소연료보조금 신청 시, 대폐차보조금 신청 시 화물, 버스, 택시 연합회에서 입력하는 대폐차보조금 수급자의 개인정보가 수집됨. - 유가보조금포털시스템 사용자는 본인 인증(인증기관:NICE)을 거쳐 사용승인을 위한 정보를 입력하고 입력한 개인정보는 유가보조금포털시스템 DB에 저장되며, 사용승인이 완료된 사용자는 통계정보, 주유소POS신고 업무를 수행함. - 유가보조금포털시스템 포털회원은 본인 인증(인증기관:NICE)을 거쳐 가입승인을 위한 정보를 입력하고 입력한 개인정보는 유가보조금포털시스템 DB에 저장되며, 유가보조금 관련 정보 조회, 부정수급 신고 및 결과를 확인함. - 개인정보 보유·이용, 제공, 위탁 단계 - 관할관청 유가보조금관리 업무 담당자는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한 수급자관리, 차량관리, 의심거래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고, 수급자 자격 조회, 차량차적조회, 차량 보험조회, 수급자 면허조회, 지방세 납부 확인 등을 위해 카드협약사(삼성카드, 국민카드, 우리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한도관리시스템, 교통안전공단, 보험개발원, 경찰청, 행안안전부 등에 자료 요청을 위한 정보를 제공함. -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 개인정보처리는 유가보조금포털시스템 구축과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 운영으로 나누어 위탁하고 있으며, 수탁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 처리현황 점검 등 관리·감독을 함. - 개인정보 파기 단계 -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 '수급자', '사용자', '포털회원'의 개인정보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관리 규정』 제32조(문서 등의 보존) 및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4조(문서 등의 보존)의 법령에 따라 5년을 보존기간으로 하고 보존기간이 도래한 개인정보는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 개인정보 파기계획'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파기·관리할 계획임.					

[개인정보처리 흐름도]



영 향 평 가 기 준	평가기준 변경사항 및 사유	추가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이 공공시스템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의 보호조치 평가영역으로 2개 평가분야(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의 관리적 보호조치(4개 평가항목),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의 기술적 보호조치(3개 평가항목)) 7개 평가항목을 추가함(6.1.1~6.2.3)
		변경	해당없음
		삭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RFID, 생체인식정보, 위치정보, 가명정보,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등 특정 IT 기술을 활용하지 않아 특정 IT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 평가 영역의 30개 평가항목을 삭제하였음
	주요 평가기준	- 개인정보 보호법(2024.03),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2023.09) 등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을 반영하여 평가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2조(자료 제공 요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의 처리)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1조(유류구매카드 사용자)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2조(유류구매카드 미사용자)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32조(문서 등의 보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의10(자료의 제공)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12조(연료구매카드발급절차) -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18조(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 방법) -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제24조(문서 등의 보존)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민감 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평가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평가	- 영향평가 결과 “이행(양호)”로 평가된 평가 영역 ① 개인정보취급자 관리 분야 분석·평가 - 개인정보취급자의 접근권한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5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를 근거로 하는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및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규정하는대로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최소한의 인원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개인정보 취급자를 지정하고, 최소한의 개인정보취급자를 등록하고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있으며, - 관리·감독은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및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규정하는대로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연간 개인정보보호 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보안서약서를 받아 관리하고 있음. ② 개인정보파일 관리 분야 분석·평가 - 개인정보파일 대장 작성·변경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83조(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 규정대로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운영하는 ‘수급자’, ‘사용자’ 및 ‘포털회원’ 개인정보 파일을 현행화하여 개인정보파일 대장을 작성 관리할 계획이며, - 운영하는 ‘수급자’, ‘사용자’ 및 ‘포털회원’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에 따라 국토교통부 본부에 보고 및 협의 후 현행화하여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할 계획임. - 영향평가 결과 “부분이행(미흡)” 평가항목 및 “미이행(취약)”으로 평가된 평가항목 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비정상적인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대책으로 관리자 로그인 알림 미적용 상태이면 다량의 개인정보처리가 가능한 비인가자의 관리자 권한 도용 등에 의한 다량의 개인정보 유출, 위·변조, 훼손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4.1.7) ②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처리권한을 그 역할에 따라 최소한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업무 범위를 초과하는 개인정보 처리로 인한 개인정보의 유출, 위·변조, 훼손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4.1.10)(취약) ③ 공공시스템 운영협의회를 설치·운영하지 않으면 공공시스템에서 중점 관리해야 하는 암호화 조치, 접근통제, 접속기록 관리 점검 등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개인정보의 유출, 위·변조, 훼손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6.1.3)
개 선 조 치	- 영향평가 결과 “부분이행(미흡)”으로 평가된 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방안 (“미이행(취약)”으로 평가된 항목 없음) 1. (4.1.10) 접근권한 최소부여 - 개인정보취급자의 처리 권한은 현재 접근권한 관리에서 수급자 유형에 따른 업무단에서의 권한 부여가 아닌 개인정보 처리 시 정보주체의 정보를 조회, 입력, 변경, 삭제, 다운로드 등 세부 기능 단위의 접근 권한 부여 방식으로 바꾸어 업무 범위를 초과하는 개인정보처리로 인한 개인정보의 유출, 위·변조, 훼손 등을 방지할 수 있게 개선이 필요함. 2. (4.1.7) 관리자 로그인 알림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비정상적인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대책으로 현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에 구현되어 있는 장기 미접속자 계정 잠금, 동일계정 동시 접속 제한 기능에 더하여 업무 시간 외 업무 계정 접속 시 관리자 등 특수권한 로그인 시 알림 기능 추가를 권고함 - 위험요소에 따른 개선조치 방안 - 위험요소에 따른 정보주체 인지사항 - 영향평가 대상시스템을 이용하는 정보주체가 인지해야 할 위험요소 및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사항은 없음 - 또한, 영향평가 대상시스템에서 처리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호조치 하는 내용 및 정보주체가 알아야 할 사항은 없음

평가결과	• 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의 개인정보처리에 따른 침해 위험성을 아래 평가영역 별로 분석·평가하였음 - 대상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10개 평가항목) -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6개 평가항목)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25개 평가항목) -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 (36개 평가항목) -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의 보호조치(7개 평가항목) • 총 84개의 지표 평가 결과 “이행(양호)” 67개, “부분이행(미흡)” 2개, “미이행(미흡)” 0개, “해당 없음(관련 없음)” 15개 항목이 식별되어 도출된 개선과제는 2개이며, 전체 이행률은 99%로 평가되었음. • 대상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평가영역 - 개인정보보호 조직, 개인정보보호 계획, 개인정보 침해대응, 정보주체 권리보장 분야 등 대상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모두 우수하게 관리되고 있음. •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평가영역 - 개인정보취급자 관리, 개인정보파일 관리,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3개 분야의 대상 시스템의 관리 체계가 모두 우수하게 관리되고 있음.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평가영역 - 개인정보의 수집, 보유, 이용·제공, 위탁, 파기 분야 등 5개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관리체계가 모두 우수하게 관리되고 있음. -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의 처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를 근거로 수집하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2조(자료 제공 요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의 10(자료의 제공)을 근거로 유가보조금 수급자 및 차량정보 확인 및 자료요청을 위해 카드협약사, 교통안전공단, 보험개발원, 경찰청, 행정안전부에 개인정보를 제공함. •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 평가영역 - 평가분야 접근통제, 개인정보의 암호화,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악성 프로그램 등 방지, 물리적 접근 방지, 개인정보의 파기, 기타 기술적 보호조치, 개인정보 처리구역 보호 등 8개 분야의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는 우수하게 관리되고 있으나, - 평가분야 ‘접근권한 관리’에서 2개 항목(평가항목 : 4.1.7, 4.1.10)이 “부분이행(미흡)”으로 식별 되었음. •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의 보호조치 -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의 기술적 보호조치,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의 관리적 보호조치 2개 평가분야의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의 보호조치가 모두 우수하게 관리되고 있음.
------	---